

## 윤리규범 실천지침

### 1. 총 칙

#### 1.1 적용대상

본 윤리규범 실천지침(이하 “실천지침”)은 SK온테크플러스 주식회사(이하 “회사”) 및 산하 투자회사(해외법인 포함)에 재직중인 구 성원(계약직, 파견직 등 포함)에 대하여 적용한다.

단, 투자회사 중 회사가 일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및 회사와 거래 또는 계약관계가 있는 사업파트너는 회사의 윤리규범을 준수하기를 권장한다.

#### 1.2 목 적

본 실천지침은 회사의 구성원이 윤리규범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갈등상황에 대해 의사결정과 행동의 판단기준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# 1.3 윤리적 의사결정 및 행동원칙

구성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윤리적 갈등상황에 놓이게 될 경우 윤리규범과 본 실천지침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여야 한다.

단, 실천지침에 판단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다음의 의사결정원칙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여야 하며, 자신의 판단에 확신이 없는 경우에는 조직의 리더 또는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질의·상담하여 그 해석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.

- 합법성 : 자신의 행동이 법규 또는 사규 위반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가?
- 투명성 : 자신의 의사결정 과정과 내용을 공개할 수 있는가?
- 합리성 : 다른 구성원들도 동일한 상황에서 같은 결정을 할 것인가?

## 2. 구성원의 자세

### 2.1 성실한 업무수행

구성원은 자신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신의성실(信義誠實)의 원칙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
### 2.2 이해상충(利害相衝)의 해결

- 1) 구성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회사와의 이해상충으로 회사에 대한 충실(忠實)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.
- 2) 유의하여야 할 이해상충 행위는 다음과 같다. 단, 이는 모든 이해상충의 경우를 열거한 것은 아니므로 실제 상황에서는 구성원들의 엄격한 판단과 적용이 요구된다.

#### • 행위가 금지되는 경우

- 회사의 자산이나 경영정보를 개인적인 용도로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
- 업무상 지위를 남용하여 협력회사 등에 대해 인사청탁, 각종 편의 제공 요구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
- 성실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정도의 노력이 소모되는 부업활동 등

- 조직의 리더에게 이해상충 내용을 공개하고, 전결규정 등 관련 절차에 따라 회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경우
  -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회사와 계약 또는 거래하는 행위
  - 업무를 통하여 직·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협력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경영진의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등

### 2.3 회사 자산 및 정보의 보호와 적절한 사용

구성원은 회사의 유·무형자산을 보호하고 정당하게 사용하여야 한다.

- 1) 회사의 자산을 승인 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않아야 한다.
- 2) 회사의 예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, 회사가 정한 목적에 맞게 지출하고 회계장부에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.
- 3) PC, 인터넷, 전자메일, 전화/팩스 등을 개인적인 용도로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.
- 4) 회사의 특허권, 영업권, 상표권, 저작권, 기타 자산가치가 존재하는 정보 등의 지적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. 또한 타인 또는 타사의 지적재산권도 동일하게 보호하여야 하며, 특히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.
- 5) 사업 정보 및 기술정보를 포함한 회사의 정보자산을 보안관리 규정에 따라 엄격히 관리하여야 한다. 정보 자산의 공개여부 및 범위는 관련 법규 및 사규, 회사 방침에 따라 결정된다.
- 6)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기밀정보를 기반으로 주식을 거래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. 특히, 대규모 납품 계약

또는 설비 구매 계약 등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취하거나 손실을 회피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여야 한다.

7) 업무 수행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는 정당한 방법으로 획득하여야 한다.

#### 2.4 선물, 접대 등의 수수(授受)

구성원은 모든 경영활동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여야 한다.

- 1) 직무 관련성이나 명목에 관계 없이 이해관계자에게 선물이나 접대 등을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.
- 2) 구성원은 직무 관련성이나 명목에 관계 없이 협력회사 등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선물이나 접대 등을 받지 않아야 한다.
- 3) 선물, 접대 등의 수수 금지는 직·간접적 모든 형태에 적용된다. 단, 상호간의 건전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와 관련 법규 및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선물이나 접대 등을 주고 받을 수 있으며, 이에 대한 세부지침은 관련 법규에 따라 조직 단위로 제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.

#### 2.5 구성원간의 상호존중

- 1) 구성원은 동료 및 상하간에 서로 존중하고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와 SK 구성원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한다.
- 2) 성(性), 학력, 출신지역, 결혼, 인종, 국적,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지 않아야 한다.
- 3)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근무 분위기를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(성희롱, 폭언 등)를 하지 않아야 한다.

### 3. 법규 및 회사 경영방침의 준수

구성원은 회사 경영활동과 관련된 국내·외 법률 및 회사 방침과 사규를 명확하게 숙지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
#### **3.1 품질 방침의 준수와 고객정보의 보호**

- 1) 품질, 신뢰성 및 안전성에 대해 고객의 요구사항과 관련 법규 및 8 - 5 계약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공급할 책임이 있으며, 이를 위하여 품질경영시스템의 제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2) 고객에게 제품의 성능과 위험을 정확하게 알려야 하며 허위 또는 과장 광고를 하지 않아야 한다.
- 3) 고객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구성원은 관련 법규 및 회사 방침, 사규에 따라 보호 절차와 지침을 수립하여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.

#### **3.2 경영 정보의 작성과 공개**

- 1) 회계 정보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 및 관련 법규, 사규에 따라 정확하게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하며 회계정보를 왜곡하거나 숨기지 않아야 한다.
- 2) 재무 정보를 포함한 회사의 모든 경영 정보는 관련 사실 또는 거래내역을 정확히 반영하여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.
- 3) 외부 이해관계자에 대한 경영 정보의 공개는 관련 법규 및 사규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.
- 4) 허위 보고(은폐, 과장/축소, 지연 보고) 등의 경영정보 왜곡 행위를 지시하거나 하지 않아야 한다.

### 3.3 공정한 거래와 경쟁

- 1) 공정거래 관련법규 및 회사의 공정거래자율준수 관리규정을 명확히 이해하고 준수하여야 한다.
- 2)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정거래 또는 법무 담당부서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처리하여야 하며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지 않아야 한다.

### 3.4 안전·보건·환경에 대한 방침

- 1) 안전·보건·환경과 관련된 국내·외 법규 및 국제협약을 준수하고, 안전·보건·환경 성과의 지속적 개선을 추구하여야 한다.
- 2)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.
- 3)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, 환경보호 활동에 적극 참여 하여야 한다.

### 3.5 반부패 관련 국제협약 및 국내·외 법규 준수

- 1) 부정 청탁 및 금품,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아야 한다.
- 2) 부정 청탁 및 금품,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직자등에게 금품, 등을 제공하거나,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야 한다.
- 3) OECD 뇌물방지협약, UN 부패방지협약, 미국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, 영국 Bribery Act, 한국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 방지법 등 반부패(뇌물 및 돈세탁 포함)와 관련된 국제협약 및 국내·외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.
- 4) 반부패 관련 법규 위반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

Compliance, 법무 또는 윤리경영 담당부서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처리하여야 하며,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지 않아야 한다.

### 3.6 기부·후원에 대한 방침

회사의 기부·후원 행위는 관련 법규 및 사회통념 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른 승인을 득한 후 이루어져야 한다. 단, 정치적 목적의 기부/후원 등은 엄격히 금지된다.

## 4. 실천지침의 운영

### 4.1 책임

- 1) 모든 구성원들은 윤리규범과 실천지침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, 의문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직의 리더 또는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질의·상담하여 그 해석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.
- 2) 조직의 리더는 소속 구성원과 업무상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회사의 윤리규범과 실천지침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. 또한, 성실하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과 행동을 통하여 윤리규범과 실천지침을 준수함으로써 타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.

### 4.2 위반 행위의 보고 및 제보자 보호

- 1) 윤리규범과 실천지침의 위반사항을 알게 된 구성원은 이를 조직의 리더나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보고 또는 제보하여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, 해당 행위로부터 회사와 구성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.
- 2) 구성원은 정당한 제보 행위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.

3) 상담 및 제보 처리, 제보자 보호에 대한 세부사항은 ‘윤리 상담 및 제보처리절차’에 따르며 상담 및 제보 채널은 다음과 같다.

- 웹사이트: <http://ethics.sk.co.kr>
- 이메일 : [skme.ethics@sk.com](mailto:skme.ethics@sk.com)
- 우 편 : 충청남도 서산시 성연면 207, SK온테크플러스 경영지원팀 윤리 경영담당자

#### 부 칙 (2023. 9. 1)

##### 1. 시행일

본 실천지침은 2023년 9월 1일부로 시행한다.

##### 2. 위반에 대한 조치

본 실천지침의 위반사항은 사규에 따라 처리한다.

##### 3. 경과 조치

회사와의 이해상충 행위를 포함하여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실천지침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상위 직책자 또는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2023년 10월 31일 까지 신고하여야 하며, 이에 대하여 회사는 구성원에게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.

#### 부 칙 (2025. 7. 22)

본 실천지침은 2025년 7월 22일부로 시행한다.

**【끝】**